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29 |
|----------|-----|

2022. 4. 25.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공동브랜드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기준마련 (안 제4조)
- 공동브랜드 위원회 심의 및 심의 사항 구체화 (안 제6조)
-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심의 생략 기준마련 (안 제7조)
-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·사후관리·사용중지·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)
-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 (안 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(상표) 일부 변경과 우수농산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4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대상자 및 자격 기준 요건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였고, 안 제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용, 사후관리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안 제8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16조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전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남양주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수농산물을 유통,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개척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